〈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곳개용 정보곳개서'로서, 정보곳개서 워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곳개 처리 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1912]

[정보공개서 친초 등록일

2023 12 28 1

fik3369@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 01. 06]



[혼밥에빠진날]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폴인키친」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폴인키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 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 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 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 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 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 기 바랍니다.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0, 제6층 601호(가락동)

[대표 전화번호] 1877-3595

[가맹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1877-3595

2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7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11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8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31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33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35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회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회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혼밥에빠진날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0, 제6층 601호(가락동)					
법인 주식회사 폴인키친 2023.04.28.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05.01. 이재숙 1877-3		3595	-			
법인등록번호		110111-8624945 사업자등록번호		88	9-88-0282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0, 제6층 601호(가락동)			
사내이사	이재숙	혼밥에빠진날	혼밥에빠진날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이재숙	1877-3595	-	
			서울시 등	송파구 송파대로28 601호(가락동)	길 20, 제6층	
감사 김재경	혼밥에빠진날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이재숙	1877-3595	_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제이케이 빠진날	혼밥에 빠진날	2024.01.1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33, 1층 (태평동)	김재경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혼밥에빠진날"이라 함)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혼밥에빠진날			
상 호	혼밥에빠진날 OO점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명과 상징하는 건축물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혼밥에빠진날	출원 : 제 40-2022-0132046 호 등록 : 제 40-1947737-0000 호		
광 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		

명칭은 현재 브랜드를 나타내며, 상호는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할 내용으로 예비 창업자에게 부여되는 가맹점포명입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	=	-
2022년	-	-	-	-	-	-
2023년	152,654	48,294	104,360	741,957	53,619	48,294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컨턴 어구	10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이재숙	사내이사	2023.5 ~ 현재	주식회사 폴인키친 사내이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7 I TII 7 1	DITILO:	2022.10 ~ 현재	제이케이빠진날 대표	업무 총괄	
	김재경 감사		2023.5 ~ 현재	주식회사 폴인키친 감사	감사 업부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NI G	상근	비상근	작전구(8)	
2023년 12월 31일	1	1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감사 (특수관계인)	김재경	가맹사업 경영	2022.10 ~ 2024.1	혼밥에빠진날 (등록번호 20231912) 라는 영업표지의 한식 브랜드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일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	----------------	---------------------------

혼밥에빠진날	상표 서비스표		출원번호 제 40-2022-0132046 호 등록번호 제 40-1947737-0000 호	김새경	(2032.12.13)
--------	------------	--	--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상표사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취득하였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혼밥에빠진날] 가맹사업 현황

1. [혼밥에빠진날]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2년 10월 12일 (계약 체결일)

2. [혼밥에빠진날]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이케이 빠진날	혼밥에빠진날	김재경	2022.10 ~ 2024.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33, 1층 (태평동)
주식회사 폴인키친	혼밥에빠진날	이재숙	2024.1 ~ 2024.4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1514호 (문정동, 문정대명벨리온)
주식회사 폴인키친	혼밥에빠진날	이재숙	2024.4 ~ 현재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0, 제6층 601호(가락동)

3. [혼밥에빠진날] 업종

영업표지	업	<u>~</u>
정합표시	대분류	소분류 (주요 상품)
혼밥에빠진날	한식	찌개, 덮밥, 도시락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혼밥에빠진날]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C 71: 2117
지역	2021.12.31		2021.12.31 2022.12.31			2023.12.31			
N S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	_	-	3	2	1	24	23	1
서울	_	_	-	2	2	-	8	8	0
부산	-	_	-	-	-	-	2	2	0
대구	_	_	-	1	_	-	1	1	0
인천	_	_	_	-	_	-	1	1	0
광주	_	_	1	1	_	-	0	0	0
대전	_	_	_	_	_	_	1	1	0

울산	_	-	_	_	_	_	1	1	0
세종	_	-	_	_	-	_	1	1	0
경기	_	-	-	1	-	1	5	4	1
강원	-	-	-	-	-	_	1	1	0
충북	-	_	_	_	_	_	1	1	0
충남	_	-	-	_	-	_	0	0	0
전북	-	_	_	-	_	_	0	0	0
전남	_	-	-	_	-	_	2	2	0
경북	_	-	-	-	-	_	0	0	0
경남	-	-	_	-	_	_	0	0	0
제주	_	ı	ı	-	ı	_	0	0	0

^{*}위의 직영점은 이전 가맹본부 현황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최근 3년간 [혼밥에빠진날]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_	_	_	_	_	_
2022	-	2	_	-	_	2
2023	2	21	-	-		23

6. [혼밥에빠진날]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혼밥에빠진날]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산출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당	가맹점 수
전체	23	186,529	8,648	400,482	33,040	13,493	1,113	7
서울	8	_		-		_	-	2
부산	2	-	-	-	-	-	-	1

대구	1	-	-	-	-	-	-	0
인천	1	-	-	-	-	-	-	1
광주	0	-	-	-	-	-	-	0
대전	1	-	-	-	-	-	-	0
울산	1	-	-	-	-	-	-	1
세종	1	-	-	-	-	-	-	0
경기	4	-	-	-	-	-	-	1
강원	1	-	-	-	-	-	-	1
충북	1	-	-	-	-	-	-	0
충남	0	-	-	-	-	-	-	0
전북	0	-	-	-	-	-	-	0
전남	2	-	-	-	-	-	-	0
경북	0	-	-	-	-	-	-	0
경남	0	-	-	-	-	-	-	0
제주	0	-	-	-	-	-	-	0

- 상기 표 가맹점사업자 별 매출액은 배달의민족(주문내역), 쿠팡이츠(매출관리)의 정보를 토대로 산출 및 기재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아래의 사항을 산출 및 기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6개월 미만 운영한 경우 산정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운영한 경우 연환산하여 산정 및 기재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산정 제외
- *상기 표 매출액은 상권, 입지, 유동인구, 연령층,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방식 등의 사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매출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8. [혼밥에빠진날]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혼밥에빠진날]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3	17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 및 지역 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 [혼밥에빠진날] 가맹사업과 관련한 광고 및 판촉비 지출 내역은 510천원 (손익계산서 기준)입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 개서 [V]을 참고하십시오.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혼밥에빠진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 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				
가맹비	2,200	가맹 계약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	가입비 등의 대가
개점 전 교육비	3,300	동시	반환될 수 있음	교육 개시 이후	-조리/서비스/운영 -7일/1인 기준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당사는 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十七	신규 가입자
합계	5,500
가맹비	2,200
개점 전 교육비	3,3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면적(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계		22,550	1,503			49.5㎡ (15평) 기준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0 (자율)	-	협의		인테리어 별도
주방설비 및 집기류	별첨참조	16,500	550	협의	공사·발주	중고물품 혼용 가능
싸인물		2,750	_	협의	전 계약취소	
최초 공급상품		3,300	_	협의		
POS	미지정	임대	_	협의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	당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 사업자 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20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혼밥에빠진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J10 C.C., T	— — 7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220	익월 5일	반환 안됨	ı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100% 가맹점사업자 0~50%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광고 미집행	광고 집행	전체 가맹점 균분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에 따라 각 가맹점별로 산정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판촉 미집행	판촉 집행	
보수 /특별 교육	가맹본부	실비	지정일	미실시	_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가맹본부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	미반환	변경설치	

		협의하여 부담				
제조물 책임보험 화재보험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점포환경 개선비용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형의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POS 사용료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대금 결제 연체 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단위: 천원)

당사는 2024년부터 [혼밥에빠진날]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지만, 가맹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12.31. 기준 법인전환 전 내역을 기재 드립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맹점의 영업상황 등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관계를 탈퇴할 수 있으며,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가맹본부와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 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 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 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혼밥에빠진날]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희망 시, 그 신청이 당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오픈을 위한 행정적 실비, 교육비 등을 납부하고 양수가 가능합니다(단, 양도인의 잔존하는 계약기간 내에 한하여 유효함).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인의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신규 가맹 계약을 요구할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오픈을위한 행정적 실비를 포함한 가맹비 전액과 교육비 등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운영권 양도에관한 자세한 절차는 본 정보공개서 [V-7-2)]을 참고하십시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된 후 귀하의 모든 권리는 즉시 소멸되고, 귀하는 당사의 상호, 간판 등의 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전화번호(홈페이지,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등), 배달앱, 기타 홍보사이트의 삭제 및 당사가 제

공한 설비, 기기, 운영 매뉴얼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및 당사의 거래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에 계약과 관련된 투자비용이나 영업권 등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당사의 영업 비밀, 사업내용, 고객 정보 등을 누설하는 등 당사의 사업에 피해가 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는 가맹점의 철거·원상복구 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서에 규정한 철거·원 상복구·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금일십만원정(₩100,000)의 지연손해배상 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혼밥에빠진날]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구분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별	첨참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 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순번	품목(단위)	공급	가격	구분
군인	급속(연귀)	상한	하한	70
1	[별첨 1] 참고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혼밥에빠진날]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물품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2023년부터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일부 <u>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u>

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혼밥에빠진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u>경제적 이익은 다</u>음<u>과</u>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2024년 법인전환하여 가맹사업을 개시하였지만, 가맹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12.31. 기준 내역을 기재 드립니다.
- 2) 당사가 [혼밥에빠진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u>경제적</u> <u>이익이 없습니다.</u>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V-3-3)] 참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회 위반: 구두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경고 3회 이상 위반: 서면 시정경고 + 가맹사업법에 의한 계약해지 통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

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본 정보공개서 V-3-1)에서 지정된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경고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가맹점 판매 제품·상품		3회 이상 위반 : 서면 시정경고 + 가맹사업법에 의한 계약해지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점 2] 창고		변동시 공지	정보공개일 기준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가맹계약 체결 시 가 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822 US BT	가맹본부	계열회사	
찌개, 덮밥 등의 한식 전문점	혼밥에빠진날	_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반경 1.5km 이내 행정구역 동 단위 설정	별지에 지도를 별첨하여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후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 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상 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홍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 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68%	32%	_	-	

▶ 위의 직영점은 이전 가맹본부 현황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혼밥에빠진날]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 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계약서

 ○ "을"이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갑"이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제2항
○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 키지 아니한 경우	
○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다만, "을"이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 매 신청이 된 경우	
○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갑"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계약서
○ "을"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24조 제1항
○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아래 "갑"의 상품을 가맹사업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을"이 가맹계약서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을"의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을"의 채무가 일정수준(보증금 등)을 넘거나 또는 대금지급(로열티 등) 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서 제35조 제1항
○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갑"이 실시하는 정기, 비정기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서 [제13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 한 경우	
○ "을"이 가맹계약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을"이 가맹계약서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브랜드 보호와 통	

일성 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

- "을"이 "갑"과 사전 협의없이 가맹계약서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을"이 가맹계약서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가맹사업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을"이 "갑"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등 가맹계약서 [제 29조 및 제32 조]를 위반한 경우
- "을"이 가맹계약서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한 "갑"의 시정요구를 받고 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을"이 가맹계약서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 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을"이 가맹계약서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서면승인 없이 영 업양도 등을 한 경우
- "을"이 노후된 점포설비에 대한 "갑"의 교체, 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 우
- ("을"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을"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정 상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특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즉시 해지 사유	alti uo	관련
국시 에시 자규		계약조문

-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 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한다.

계약서 제35조 제2하

- "을"이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 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 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간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	
수정 완료	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С)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주은 주스하 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 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 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본사 (1877-3595)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매장 오픈을 위한 행정적 실비, 교육비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 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 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과 가맹본부의 상속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 전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은 물론이며, 당사의 영업비밀, 매뉴얼 등의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하기 전 까지 귀하가 [혼밥에빠진날]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당사의 메뉴를 취급하는 음식점	당사는 경업을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본사 (1877-3595)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혼밥에빠진날]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가맹점주 자율	월 25일 이상(주 6일 이상) 영업	문의: 본사 (1877-359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개별 점포별로 상이	직접 근무	배우자, 친·인척 등	_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혼밥에빠진날]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행사에 따라 비용은 실비를 원칙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상품 및 브랜드광고	1 50%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50%	50% (모든 가맹점 균분)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에서 영고 (TV, 라디오, 신문, 협찬등),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		(2 1 8/11)	
판촉	할인행사	행사에	∥ 따라 산정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행사	증정행사	행사에	∥ 따라 산정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가맹점별 분담금 확정·납부 → 행사 시행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	------------	------------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가능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본 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 적인 변심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 위약벌로 [금이천만원정 (₩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별로 [금이천만원정(₩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의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별로 [금이천만원정(₩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

니다.

- 4) 무단 폐점, 무단 영업표지 변경,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포를 양도하는 등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의적인 중도해지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u>남은 계약일 * 삼만원정(₩30,000)</u>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 한도는 [금이천만원정(₩20,000,000)]으로 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 종료 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 연손해배상금으로 1일당 [금일십만원정(₩1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과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가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리케 · 신간	면, 무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금액
합계		45일 내외	[28,05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가맹계약서 제공	D-45~43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0~27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D-26	-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26	5,5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5~23	22,550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일정 확인	D-22	-
인테리어 및 설비 공사	- 공사 실시	D-22~3 (20일)	-
교육실시	- 메뉴 조리 기술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	D-5~+1	가맹금에 포함
설비 및 집기	- 주방 및 홀 설비 - 주방기기, 집기비품, 원·부자재 입고	D-10~2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과 비용은 표준모델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 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 또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 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 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 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 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 어 등의 노후 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 는 경우 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 맹사업의 유지 하기 어렵거 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 한 근경우	○인테리어 공사 비용 (장비·집기의 교 체 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공 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 하게 가맹점사 업자가 추가 공 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는 점포환경 개선: 20% '전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포환경개선: 40%	역서 등 공사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 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중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부당액 중 잔에 비례하는 부급하지 아니지지급한 경우에는 환수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 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개선방안을 제공	부담	문의: 본사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항)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제공	가맹점	(1877–3595)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혼밥에빠진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본사 교육	-회사 및 브랜드 소개 -서비스 및 고객관리	이론 및 실습교육	가맹점 개점 전	필수 교육
현장 교육	-개점 인력 파견 -가맹점주 운영 지원 -고객서비스 훈련 -조리 교육	실습교육	가맹점 개점 시	필수 교육
보수 교육	개점 교육에 대한 보수교육	실습교육	수시	
특별 교육	신메뉴 출시, 고객 서비스 등	실습교육	수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혼밥에빠진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7일(1인 기준/본사 내방 교육)	최초 가맹금에 합산	최초 계약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의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 운영자는 당사의 기준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한 내신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가맹계약에 근거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성남본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33, 1층(태평동)

^{*}위의 직영점은 이전 가맹본부 현황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10개월(655일)	_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835,316	POS상 매출액을 근거로 작성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 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가맹본부 지정 원부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1-1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가맹본부 지정 판매상품



[별첨3] 가맹본부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4] 인근 가맹점 현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문서를 제공합니다.)

No.	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u>년 월 일 시</u>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
부터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별첨5]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수령확인서 -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u>년 월 일 시</u>	제공받은 장소	

(가맹계약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부로 부터

(가맹계약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별첨6]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수령확인서 - 가맹점사업자>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u>년 월 일 시</u>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 부터					
가맹본부: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정보공개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인) 또는 서명

[별첨7]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상호(영업표지)			
가맹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9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귀하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기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에치기관의 장은 에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 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³]